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국민권익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 행위를 근절하고, 이와 관련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행위기준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규정 개선(안 제13조의3)

- 1) 공무원이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부당 행위에 추가함
- 2)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보,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

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제1항 위반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제1항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조사 기간 동안 제1항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, 재택근무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임시조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전보, 휴가, 근무장소 변경,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, 전보,

근무장소 변경, 재발방지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
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의3(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) 공무원은 자 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 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 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	제13조의3(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<u>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상</u> <u>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·정</u> <u>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</u>
3. ~ 5. (생 략)	4. ~ 6. (현행 제3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<u>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</u> <u>원의 제1항 위반행위 발생 사실</u> <u>을 인지하거나 제1항 위반행위</u> <u>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</u> <u>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</u> <u>실시하여야 하며, 조사 기간 동</u> <u>안 제1항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</u> <u>었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을 보호</u> <u>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</u> <u>장소 변경, 재택근무 등 적절한</u> <u>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</u>

<신 설>

우 임시조치 대상자의 의사에
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
된다.

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
따른 조사 결과 제1항 위반사실
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
하면 전보, 휴가, 근무장소 변
경,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
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
있다.

<신 설>

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위
반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 징
계, 전보, 근무장소 변경, 재발
방지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
여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	
연 락 처	(044) 200 - 7675